

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.

제 출 자 : 목 포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무중 위법·부당사항에 대해 주민감사청구요건인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20세 이상 주민 700명 이상의 연서로 정하였으나
-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광역단체는 300명 내외, 기초단체는 200명 내외로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었고
-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감사청구 주민 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
- 우리시의 주민감사청구인 수 “700명”을 “200명”으로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감사청구 주민 수 조정(안 제2조)

-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의 “주민 700명 이상의 연서”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“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”로 가능하도록 개정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조의4

6. 관련부서 의견 : 행정자치부 권고안

7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결과

- 기 간 : 2002. 8. 12. ~ 2002. 9. 1(20일간)
- 결 과 : 의견없음

9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10. 기타 참고사항 :

목포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 : 원안가결(2002. 10. 8.)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목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700명”을 “20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조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감사청구주민수)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 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<u>700명</u> 이상 이어야 한다.	제2조 (감사청구주민수) ----- ----- ----- <u>200명</u> ----- -----